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목 차>

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2.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김지영
	담당부서 (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양청삼		연락처	02-2100-3057
	과장	김직동		이메일	kjy260529@korea.kr

2025. 05. 22. 작성

개인정보정책국장

양청삼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2.규제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제3항		
	3.위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5.30~2025.07.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침해 및 유출 발생시 신속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 한 개의 국내대리인이 여러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여러 국내대리인이 한 주소지에 근거를 두는 등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민원 접수 및 처리, 피해구제, 조사 관련 서류 제출 등 업무 수행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 및 보완할 필요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25.4.1. 공포, '25.10.2. 시행) ○ 정부개입 필요성 –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하여, 이를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 – 해외 개인정보처리자(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		
	7.규제내용	○ 해외 개인정보처리자가 스스로 설립한 국내 법인 외에, 임원 구성 및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제3항 신설) – 법인의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50/10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 1. 전년도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저장, 관리되는 국내 정보주체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 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 지정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자		
	9.규제목표	해외 개인정보처리자(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에 해당 － 국내대리인 제도의 대상이 되는 해외사업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가 다수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게 됨 － 매출액 또는 보유 개인정보 기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로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면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없는 경우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때의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제4조), 국세기본법(제1조의2)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으로서 합리적인 요건으로 판단됨 － 기존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편익)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정보주체가 제기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 가능 － 유출 통지 및 신고, 개인정보 관련 조사시 물품 및 서류 제출 등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해외 사업자가 처리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 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현 행	개 정 안
④ <신 설>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의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여부의 확인 3.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제도 운영을 위해 지정기준 구체화 필요

* 전체 매출액 1조원 이상, 저장·관리되는 국내 개인정보 일평균 100만명 이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제1항 각 호)

- 한 개의 국내대리인이 여러 사업자를 대리하거나,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여러 국내대리인이 한 주소지에 근거를 두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
- 국내대리인의 연락처 누락 등으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정부개입 필요성) 국내대리인 지정기준을 규정하여,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 및 피해구제 등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해외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국내법인이 있거나, 임원구성 및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국내대리인 실질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인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을 임원구성의 경우 50/100, 사업운영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100으로 구체화
- 위의 판단기준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등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수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진행 중(5.30.~7.9.)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 및 기준을 구체화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내대리인 제도의 시행 목적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대응 및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하여,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임
 -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라는 국내대리인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해외사업자가 설립한 국내법인이 있거나, 임원구성 및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음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원구성 및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대리인 지정기준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임원구성의 50/100 또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의 30/100을 충족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에 대해 해외사업자가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해외사업자 입장에서라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내 개인정보 처리 관련 민원대응 등 업무를 보다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목적과 수단간 비례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 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 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법률에서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내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법률에서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한 국내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신산업 관련 허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등의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신산업 관련 사전 심의, 검사 또는 사후 평가, 관리와 무관한 사안임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 및 서비스 창출과 무관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제11조

Article 11 Legal representatives	Article 11 법적 대표자
1.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which do not have an establishment in the Union but which offer services in the Union shall designate, in writing, a legal or natural person as their legal representative in one of the Member States where the provider offers its services. 2.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shall mandate their legal representatives to be addressed in addition to or instead of the provider by the Member States' authorities, the Commission and the Board on all issues necessary for the receipt of, compliance with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issued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shall provide their legal representative with the necessary powers and resource to cooperate with the Member States' authorities, the Commission and the Board and comply with those decisions. 3. The designated legal representative can be held liable for non-compliance with obligations under this Regulation, without prejudice to the liability and legal actions that could be initiated against the provider of intermediary services. 4.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shall notify the name, address, the electronic 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ir legal representative to the Digital Service Coordinato^r in the Member State where that legal representative resides or is established. They shall ensure that that information is up to date. 5. The designation of a legal representative within the Union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not amount to an establishment in the Union.	1. 유럽연합에 시설이 없지만 유럽연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국 중 하나에 법적 대표자로 법인 또는 자연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2.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회원국의 당국, 위원회 및 이사회가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령한 결정의 수령, 준수 및 집행에 필요한 모든 문제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를 대신하여 수신(address)하거나 제공자와 함께 이를 수신하도록 법적 대표자에게 위임(mandate)해야 한다.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그 법적 대표자에게 회원국 당국, 위원회 및 이사회와 협력하고 그러한 결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해야 한다. 3. 지정된 법적 대표자는 중개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책임 및 법적 조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본 규칙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4.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법적 대표자가 거주하거나 소재한 회원국의 디지털 서비스 책임자(Coordinator)에게 법적 대표자의 이름, 주소, 전자 메일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알려야 한다. 그들은 해당 정보를 최신화해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유럽연합 내 법적 대표자의 지정은 유럽연합 내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 타법사례

- 공정거래법 시행령

- 제4조(기업집단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상법」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서 같다)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 가. 동일인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
 - 1) 배우자
 - 2) 4촌 이내의 혈족
 - 3) 3촌 이내의 인척
 - 4) 동일인이 지배하는 국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5촌·6촌인 혈족이나 4촌인 인척
 - 5)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정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라. 동일인이 이 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회사로서 동일인이 해당 회사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명한 회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 해당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해당 회사 간에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1)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 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 2)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해당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해당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라.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해당 회사 간에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
 - 마. 그 밖에 해당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해외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해외사업자의 신규 부담 발생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법률에 의해 부여되고 있었으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3에 따라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가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사업자의 다수는 직접 설립한 국내법인이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그 국내법인을 우선 지정하여야 함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해외사업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 시행령 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해외사업자 및 국내 이용자들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되므로 기업 및 국민의 이해도 및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존 인력 및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행정적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강민국·김태호의원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 통과('25.2.24.) 및 공포('25.4.1.)

2. 향후 평가계획

- 현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 중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법인, 또는 임원 구성 및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
-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질적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 지속 병행

3. 종합결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민원처리, 피해구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
 - 해외사업자가 설립한 국내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4.1. 공포, 10.2. 시행)
- 수범자인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측가능성 및 준수가능성을 제고할 필요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 국내대리인 제도 실질화를 통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기여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되는 자
활동제목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법인이나 임원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
비용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규 비용부담 발생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부여되어 있었음 －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국내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이 있는 경우 별도의 법무법인 등이 아닌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할 의무가 발생하나, 이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법인을 활용하라는 취지의 규율로서 신규 비용 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②피규제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해외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활동제목	해외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국내법인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에 대해 국내 개인정보 처리 관련 민원 등 제기 가능
편익항목	해당없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해외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국내 정보주체가 제기하는 민원, 불만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2.규제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제4항		
	3.위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05.30~2025.07.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침해 및 유출 발생시 신속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국내대리인에 대한 해외 사업자의 관리감독이 책임있게 이행되지 않아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민원 접수 및 처리, 피해구제, 조사 관련 서류 제출 등 업무 수행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 및 보완할 필요 –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개인정보처리자(해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25.4.1. 공포, 10.2. 시행) ○ 정부개입 필요성 –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해외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알리고, 해외사업자 및 국내법인 등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준수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 국내대리인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교육 및 업무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하도록 위임(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3항)하여, 이를 마련할 필요		
	7.규제내용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3제4항 신설) –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의 수립, 이행 여부 점검,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 실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		

	9.규제목표	해외 개인정보처리자(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비용 -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업무계획 수립, 이행점검, 개선여부 확인을 수행할 필요 - 대규모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교육, 점검 등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종전에 비해 비용 발생은 없을 것으로 예상 ○ 편익 - 해외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외 사업자들의 의무 준수 가능성을 제고 - 국내대리인의 역량을 높이고 해외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해외사업자에 대해 정보주체가 제기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 가능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32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 연도를 말한다)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국내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3.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체 매출액은 전년도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 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1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인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의 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여부의 확인 3.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교육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행사, 침해 및 유출 발생시 신속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시행
-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국내대리인에 대한 해외 사업자의 관리감독이 책임있게 이행되지 않아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민원 접수 및 처리, 피해구제, 조사 관련 서류 제출 등 업무 수행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 및 보완할 필요
-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해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25.4.1. 공포, 10.2. 시행)

○ 정부개입 필요성

-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해외 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알리고, 해외사업자 및 국내법인 등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준수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 국내대리인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교육 및 업무현황 점검 등 관리·감독 방법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하도록 위임(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제3항)하여, 이를 마련할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국내대리인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민원 처리, 피해 구제, 조사 관련 서류 제출 등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관리·감

독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수행할 필요

- 업무계획 수립, 이행여부 점검,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 확인 의무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였고,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주기를 연 1회로 설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절차 진행 중(5.30.~7.9.)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국내대리인의 업무수행 역량을 높이고, 해외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우리 국민들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국내대리인 제도의 시행 목적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관련 민원대응 및 피해구제를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하도록 하여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임
 - 국내대리인 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였음
 - 업무계획 수립, 이행점검,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등 단계별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 범위를 구체화함
 -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부담을 크게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적과 수단간 비례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법률에서 정한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포괄적 개념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법률에서 정한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유연한 분류 체계에 해당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신사업 허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등의 네거티브 리스트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신사업 관련 사전심의, 검사 또는 사후평가·관리와 무관함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을 활용한 상품, 서비스 창출과 무관함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 타법사례

해당없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피규제자의 의무는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서 해외사업자의 신규 부담 발생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국내대리인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5.4.1. 공포)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일('25.10.2.)부터 발생하며,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의무사항의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임
-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범자인 해외사업자 및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국내법인 등의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업들의 이해도 및 순응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됨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존 인력 및 전문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행정적 집행 가능

○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강민국·김태호의원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 통과('25.2.24.) 및 공포('25.4.1.)

2. 향후 평가계획

- 주요 해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 의무 발생에 대하여 안내
- 위원회 차원에서 해외사업자의 업무점검, 교육실시 등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추진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질적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지속 병행할 예정

3. 종합결론

- 국내대리인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관리·감독이 책임있게 충실히 이행되지 않아 지정된 국내대리인이 민원접수 및 처리, 피해구제, 유출사고 발생시 후속조치를 위한 서류 제출 등 업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제도개선 필요
 - 해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점검, 교육하는 등 관리·감독할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5.4.1. 공포, 10.2. 시행)
-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여, 해외사업자의 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알리고 해외사업자 및 국내법인 등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준수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무 단계별 점검, 연 1회 교육 등 내용을 구체화하여 국내대리인 제도 실질화를 통한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기여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개인정보처리자
활동제목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발생
비용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업무계획 수립, 이행점검, 개선여부 확인 및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개인정보처리자
활동제목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로 국내 민원 및 불만사항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
편익항목	운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업무계획 및 이행여부 점검, 개선결과 확인, 교육 등을 통해 국내대리인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여, 중장기적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정보주체의 신뢰성 및 만족도 강화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해외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
활동제목	해외사업자가 직접 설립한 국내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관련 민원 제기 가능
편익항목	해당없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o 국내대리인 교육을 통해 역량 제고,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화로 해외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제기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불만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됨 – 국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	--